

소비홍보팀 차장대우 이 상 근

## 1. 개정이유

축산법시행규칙(2004.8.17)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이 개정되고, 돼지고기의 육질을 판정하여 표시하는 냉도체 판정방법이 '04.7.1부터 가능함에 따라 이를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과 아울러 그동안 규정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고품질 최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시 1\*\*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소매단계에서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고기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부위를 확대하며, 등급표시 중 특상등급, 상등급, 중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였음. 또한, 돼지고기의 육질을 판정하는 냉도체 판정방법에 따라 판정한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을 소매단계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 나, 식육판매업소는 포장육을 직접 제조·가공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쇠고기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부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특상등급, 상등급, 중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둠 (제7조 및 부칙)

## 3. 식육의 부위별 $\cdot$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내용 선 $\cdot$ 구 태비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5조(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① 별표3의 최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 대분할 부위인 등심, 재끝과 소분한 부위인 윗등심살, 아랫동심살 꽃등심살, 잘치살 및 채끝살은 축산불등급판정사가 발급한 당해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등급판정 확인서"라 한다)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외의 최고기 대분할 부위(안신,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양지, 사태,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문할 부위의 등급표시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표시할수있다.	제5조(식육의 등급별 구분만매) ① 별표3의 최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직육판매업소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 대문합 부위인 안심, 등집, 재플, 양지, 갈비와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교외의 최고기 대문합 부위(목심, 앞다리, 우분, 절도 사태와 이에 해당하는 소문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문합 및 소문합 부위의 등급표시는 당해 직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표시함수있다.	ŧ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의 등급표시는 1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거나, 11등급은 특상등급(11), 1등급은 특상등급(1), 2등급은 상등급, 3등급은 중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는 등급관정확인서에 표기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표시한다. 《단서규정신설》	2제1형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의 등급표시는 11 등급. 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의로 표시하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표시한다. 다만, 돼지모체 중 추가로 냉도체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A(11)등급, A(1)등급, A(2)등급, A(3)등급, B(1)등급, B(1)등급, B(2)등급, B(3)등급, C(1)등급, C(2)등급, C(3)등급, D(1)등급, D(2)등급, D(3)등급으로 표시한 수 있다.	등급기준개정 에따라 1 <sup>+</sup> 등급 신설 돼 지 냉 도 체 판 정 방 법 제도화
제7조(식육판매표시판 설치 등) ① ~ ④ (생략) ⑤ 식육 판매업 소가 포장육을 직접 제조 · 가공판매하거나 또는 육가공장등에서 제조 · 가공된 포장육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지 등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착육판매 표시판 설치 등) 로 - (4 - 현행과 같음) (호 < <u>산 - 제&gt;</u> 부 작	식육판매업소 는 포장육을 제조·생산할 수없음
	이 고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부분과 제5조제2항의 최고기 등급표시중 "복장능급, 장등급, 중등급"을 삭제하는 거정내용에 대하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 업 자 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둘